

#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19
----------	---------

제출일자	2005. 4. 21
발의자	정희석 의원 외 6인

##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이 2005.1.27 법률 73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례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
  -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의 정례회,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의 정례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개정함
  - 현행 제2차 정례회일(12월 5일)을 행정사무감사(7일), 토요일휴무일(2일), 일요일(1일)을 감안하여 10일간 앞당겨 11월 25일로 함 (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명시된 것을 삭제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의4

#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호중 “매년 12월 5일”을 “매년 11월 25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u>거창군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개최) (생략)</p> <p>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p> <p>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p> <p>1. (생략)</p> <p>2. 제2차 정례회는 <u>매년 12월 5일</u>에 집회한다.</p> <p>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 ----- -----</p> <p>제2조(개최)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4조(집회)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매년 11월 25일</u> ----- ---</p> <p>제5조(심의) ① ----- (삭제)----- -----.</p> <p>② (현행과 같음)</p>